2019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항공분야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항공분야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경상남도지사

1 시험개요

가. 채용예정인원 : 1명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시험단계
경력경쟁 채 용	지 방 소방위	항공조종	1명 (남·여 구분 없음)	1. 실기시험 2. 신체검사(인·적성검사, 서류전형 포함) 3. 면접시험

나. 채용일정

시험구분	시험기간	세부내용
• 응시원서접수	(접수기간) '19. 2. 18.(월) ~ 2. 20.(수) (취소기간) '19. 2. 18.(월) ~ 2. 25.(월)	• 인터넷 원서접수(http://www.119gosi.kr)
•실기시험	'19. 3. 12.(화) ~ 3. 15.(금)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19. 4. 11.(목)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
・인·적성검사	′19. 4. 12.(금)	•검사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
• 면접시험	'19. 5. 1.(수)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19. 5. 17(금)	• 면접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

다. 실기시험 방법 및 평가내용

시험	구분	평가방법	평가내용		
항공	¦조종	시뮬레이터 및 구술평가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라. 응시자격

1)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제51조(부정행위자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1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2019. 4. 17.)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마.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바.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 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가. 공공기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 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라.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응시자격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⑤『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소지자 ※ 자격증 보유기준일은 서류전형 전일이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해야 함 ※ 경력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임

3)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 급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채용	지방소방위 (항공조종)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3. 1. 1. ~ 1996. 12. 31.

-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 「병역법」제72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를 마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4) 신체조건 :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제1종 항공신체검사 적합판정자
- 5) 거주지 제한 : 없음

2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2019. 2. 18.(월) 09:00 ~ 2. 20.(수) 18:00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취소기간 : 2.18.~2.25. / 토·공휴일 포함)
-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www.119gosi.kr) 사이트 접속·접수다. 사진등록
 -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소방위 7,000(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 시 납부 응시료 환불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산특전 : 해당 없음

- 자격증 가점 : 적용분야 아님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 : 적용하지 않음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본 시험은 해당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3 실기시험

- 가. 시험일정 : 2019. 3. 12.(화) ~ 3. 15.(금)
 - ※ 당일 08:30까지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장 불가)
-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 다. 평가항목: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 라.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조종사자격증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 실기시험은 각 항목별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이상 득점자(각 평가항목별 4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결정

마. 합격자 공고

- 1) 공고일시 : 2019. 4. 5.(금)
- 2) 공고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게시판
- 3) 공고내용 : 실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인·적성검사 일정 등

시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포함)

가. 신체검사

- 1) 제출기한 : 2019. 4. 11.(목)까지 경상남도에 제출(서류전형 시 같이 제출)
- 2) 검사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 3) 검사장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
- 4) 검사방법 :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제1종 항공신체검사
- 5) 수 수 료 : 신체검사 수수료는 응시생이 부담
- 6) 합격자 공고 : 최종 합격자 공고와 병행 발표

나. 서류전형

1) 제출일자 : 2019. 4. 11.(목)까지 경상남도에 제출(제출방법 별도 공고)

2) 제출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3)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항공조종	①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중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비행경력증명서 1부(최종비행일 명시) ※ 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④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원본 1부 ⑤ 계기비행자격증명서 원본 1부 ⑥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⑤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부.

- 5)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①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www.di.go.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②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재직 시 징계사항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 ③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됨
 - ④ 응시자 유의사항 :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써 미 응시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 에게 있음
- 6) 합격자 공고 : 최종 합격자 공고와 병행 발표

다. 인·적성검사

- 1) 검사일정 : 2019. 4. 12.(금)
- 2) 장 소 : 별도공고
- 3) 검사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 4)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적성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5)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5 면접시험

- 가. 시험일정 : 2019. 5. 1.(수)
-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 다. 시험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 라. 평가방법: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 ※ 블라인드 면접 진행
-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면접시험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u>40% 미만의</u>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만점 중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공고일시 : 2019. 5. 17.(금)

나. 공고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게시판

<최종 합격기준>

-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이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할 수 있음
-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시험일정 및 정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시험(실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장소 등을 공지함
- 응시자는 시험(실기·면접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실시·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에 유의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 등)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사험 국민제보**

나.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 함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 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의 응시분야, 지역은 원서접수 종료 후 변경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분야, 응시자격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함

다.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실기, 면접 등)

- 문의처 : 소방청 장비항공과

- 연락처 : 044-205-7688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주)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219-1332

◆ 제출서류 문의

- 문의처 :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연락처 : 055-211-5315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1단계 (집단면접)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개별면접)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면접시험 합격기준>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u>40% 미만의</u>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만점 중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